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제안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사무소

Duncan Currie (국제수산물전문가),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

2014년 11월

내용 문의: +82 (2) 3144 1995 / jeonghee.han@greenpeace.org

그린피스 제안서 요약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이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면서 미국이 지난 해 1월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는 국격에 맞지 않게 불법어업국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린피스는 2013년 5월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 정부 관계자들에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 결과 유럽연합은 2013년 11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다시 한번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불법어업의 감시 통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안 개정과 실제 이행이 강화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유럽연합은 올해 7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였다.

그린피스는 지난 6월 '원양수산정책 개혁안' 보고서를 발표하여 현행 법에 존재하는 법적 허점과 한국 원양수산정책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탈바꿈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개정안은 유기준 의원 외 14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10월 8일자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검토 및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법 적용 강화, 불법어업 행위 처벌 강화, 불법어업 통제와 감시 강화, 원양어업 허가 통제 강화, 항만국 검색 강화 등 그린피스가 6월에 발표한 개혁안에서 제시한 많은 내용을 큰 틀에서 반영하며, 지난 해 개정된 법안 내용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층 진일보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전히 중대한 법적 허점을 지니고 있고,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며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유럽연합 조직위원회 결정 보고서, 2013년 11월 26일)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최근 적발된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사례를 통해 드러난 법적 허점이 남아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존을 이루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철저히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의 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2의 각 조항마다 제시된 '그린피스 제안' 및 '제안 이유'를 참고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존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력할 것: 개정안은 여전히 유엔 공해어업협정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수산 관리의 목적으로 통용되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존에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발의된 개정안 제 1 조, 제 4 조 참고] 이와 관련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은 한국 정부가 어업 및 어선 정보, 또는 원양어선 운영에 관련된 정보 등을 국제수산기구나

협약 등 관련 국제기관이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요건으로 삼을 때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 18 조 추가 참고]

2. **원양산업발전법이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에 적용되고 편의치적선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국민’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강화할 것:**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제12-2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며 수익적 소유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제2조 정의에서 본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의할 때 대한민국 ‘국민’ 및 ‘자’(사람)를 사람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적 실체를 포함하도록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양어업을 운영하는 회사 등 다른 법적 실체가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린피스 제안 제2조 2호 및 2호 추가 참고]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하여 법적 허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IUU 어업 활동에 연루되었을지 모르는 수상한 어업 행적을 보여 지난 10월 호주에서 열린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던 러시아 국적의 Yantar 31호와 35호의 경우, 한국 회사인 사조산업이 49%의 지분을 소유한 합작법인 Orion Co Ltd라는 회사의 소유이지만, 한국 정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 사례의 문제점을 토대로, 그린피스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 1) **수익적 소유자 통제에 관련해서 개정안 조항이 강화되어야 함:** 사조산업은 Orion Co Ltd의 소유 지분을 49%로 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를 초과한 경우’라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2호의 규정을 피하고 있음, 제2조에서 ‘국민’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그린피스는 ‘소유’의 기준을 25% 또는 그 이하로 낮추고 ‘수익적 소유’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2조 2호 및 2호 추가 참고]

- 2)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제6조)이 강화되어야 함:** 그린피스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제6조 제1항 및 제7항에서 어업허가 및 신고 의무의 대상을 현행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원양어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소유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6조 제1항 및 제7항 참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원양어업체를 사들일 때 법망을 피할 경우를 방지한다.

- 3) **원양산업발전법은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해양수산부가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여 업체가 불법어업 또는 관련 사업에 관여했음을 숨길 수 없도록 원양산업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명시하도록

법안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 개정안에는 업체가 관세 혜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합작어업을 신고하지 않는 한 숨겨진 합작업체를 찾아낼 길이 없는 등, 수익적 소유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린피스 제안 제16조의2 추가 및 제17조의2 추가, 제6조 제1항 및 제7항 참고]

3. **감독 통제 감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체계의 부재:** 개정안에는 실제 이행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가 없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 및 체계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 등을 통해 명시될 수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개정안에 분명히 명시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가 없이는 실제 이행이 사례마다 일관되지 못하거나 법을 빠져나갈 허점이 생겨 불법어업을 철저히 근절할 수 없다. 그린피스는 아래와 같은 절차 수립을 촉구한다.

- 불법어업 혐의가 있을 때 조사 절차와 권한 [그린피스 제안 제17조의2 추가 참고]
- 구체적인 항만 검색 절차 [그린피스 제안 제14조 추가 참고]
- 구체적인 기준 및 권한과 함께 IUU리스트 수립 [그린피스 제안 제15조의2 추가 참고]
-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났거나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 취할 조치 [그린피스 제안 제 15조 추가 참고]
- 어획증명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다른 출처와 대조 검토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유럽연합의 IUU 지정 보고서 34조에 명시. [그린피스 제안 제14조 추가 참고]

4.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불법어업 이력 확인 부재:** 유럽연합 조직위원회 결정 보고서(2013.11.26)는 32항에서 “한국은 조업면허 발급 이전 발생가능한 위반사항 이력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IPOA IUU의 제47(7)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6조 1항 추가 참고]

5. **법안 이행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 확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인력은 검색, 조사, 압수 등 법안 이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개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17조의2 추가 참고]

6. **처벌 강화:** 개정안의 처벌 수준은 이전 법안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불법어업으로 인해 얻은 수익보다 훨씬 높은 처벌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부족하다. [그린피스 제안 제 11 조 제 1 항, 제 33 조 참고] 한편,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모든 어획물을 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인성실업 어선들의 불법어업 사례(첨부 1 참고)를 보면, 한 배에 불법어획물과 합법어획물이 섞여 있을 때 이를 정확히 분리하여 양륙 또는 전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 실제 승선 검색이나 항만국 검색을 거치기도 전에 불법어업을 저지른 업체의 보고를 믿고 사전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여 해상에서 어획물을 전재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불법어획물이 합법어획물과 섞여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 35 조 추가 참고]

7. **투명성 강화 및 선원 인권 침해 문제 통제:** 한국 정부는 수산업 관련 의사 결정에 NGO 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불법어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표명하고 있다. (2014 년 5 월에 갱신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행동계획(NPOA-IUU) 참고) 원양산업발전법은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 4 조 제 1 항, 제 15 조의 2 제 2 항 참고] 한편, 지난 몇 년간 한국 원양어선이 뉴질랜드 등에서 물의를 일으킨 선원 인권침해 문제(첨부 3 참고)도 본 법에서 원양산업의 문제로 명시하고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그린피스 제안 제 7 조 제 1 항 제 13 호, 제 13 조 제 3 항 참고]

8.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연안국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서부 아프리카 등지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적발된 불법어업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적절한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나라의 수역에서 한국 어선이 어업 행위를 함으로써 지속가능하지 못한 어업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린피스 제안 제7조 제1항 제5호 추가 참고]

더불어 한국은 불법어획물의 한국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이력추적 제도와 어획증명서 제도 도입,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이 유사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하여 이를 수 있다.

결론

한국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상의 제안 및 첨부2에서 그린피스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 제안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원을 갖춘 효과적 정부 행정과 함께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 제안서는 원양어선은 물론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 원양산업자가 국제 기준에 맞게 사업을 지속해 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아래 첨부 2의 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린피스는 수산업은 물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전면 검토하여 사전 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이라는 양대 원칙에 기초한 보존 기조로 개혁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첨부 1:

사례 분석: 인성3호와 7호의 불법어업 (2013)

지난 해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이빨고기를 조업하다 적발된 인성 3호와 인성 7호에는 2013년 10월 말까지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기간 동안 잡은 불법어획물과 2013년 11월부터 허용된 해역에서 잡은 합법어획물이 함께 실려있었다. 인성 3호의 경우 합법어획물이 250톤, 불법어획물이 60톤에 달했고, 인성 7호의 경우 합법어획물이 151톤, 불법어획물이 113톤이었다. 해양수산부는 두 어선 모두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자료와 선사의 어획량 보고 자료를 검토한 후 합법어획물에 대해 유통을 위해 필요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두 어선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은 이들이 각각 부산 감천항, 몬테비데오항(우루과이)에 입항하여 실제 조사관이 승선하여 배를 검색해 보기도 전에 이루어졌고, 특히 인성 7호의 합법어획물은 항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른 운반선에 이동되었다.

물론 VMS자료와 어획량 보고 검토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규정(보존관리조치 10-05, Annex A5)에 따른 어획증명서 발급 조건이지만, 이 경우 두 선박 모두 불법어업을 저질렀음에도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선사가 제공한 어획량 보고를 그대로 믿고 (VMS는 어선의 이동 행적만을 확인시켜 줌) 어획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이처럼 불법어업을 한 어선의 경우 합법적으로 조업한 어획물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반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야 함은 자명하다. 본 개정안 제17조의2에 그린피스가 제안한대로 체계적인 조사절차를 수립하고 강력한 조사 권한과 인력을 갖추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게다가 불법어획물이 배에 같이 실려 있는 상황에 일부 어획물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어업자가 불법어획물과 합법어획물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어획물이 합법어획물과 섞여 양륙되거나 전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린피스가 제35조에 제안한 것처럼 불법어선의 어획물을 몰수할 때에는 선박에 있는 모든 어획물을 몰수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13조 제9항 1,2,3호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어업 의심사항이 있을 때 조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항구로 입항시키고 어획물의 양륙이나 전재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남아 있다. 만약 불법어업 행위가 있었던 기간 후에 관계 당국이 불법어업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인성 7호의 경우 만약 해양수산부가 인성 7호의 불법어업 사실을 2013년 10월 말이 아니라 2014년 2월에 알게 되었다면) 불법어업 행위 이후에 합법적으로 잡은 어획물은 몰수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불법어업을 하고도 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 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을 저지른 선박에 실려 있는 모든 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린피스가 제35조에서 제안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법 및 개정안, 그린피스 제안 비교

현행법 (2013년 7월 개정)	개정안 (2014년 10월 유기준 의원 발의)	그린피스 제안	제안 이유
<p>제1조(목적) 이 법은 <u>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해외수산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u></p>	<p>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며, 해외수산자원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 및 개발 이용 제도, 원양산업의 효과적인 통제 및 준수 체계 수립,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기 제시된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목적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하고자 수정안을 제시함.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목표임. “합리적 보존(reasonable conservation)”이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은 표현으로 수산업계가 “합리적 보존(reasonable conservation)”을 지역수산기구와 상이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음. “합리적 보존”을 목표라 할 근거 없음. 또한, 원양산업의 효과적인 통제 및 규제 준수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해야 함.</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2.“원양어업”이란 <u>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적 실체가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적 실체가 납입하거나 수익적으로 소유한(held beneficially)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u></p>	<p>법적 회피(evasion) 방지를 위하여 수익소유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제12조의2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다루고 있지만, 그 조항은 매우 모호하게</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기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원양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짓는 제2조에서부터 수익적 소유자가 포함됨을 정의해야 함.</p>
		<p><u>추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및 영구 거주자 또는 법적 실체(회사 포함)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u></p> <p>1) <u>대한민국에 등록되었거나 대한민국에 지사를 가진 회사</u></p> <p>2) <u>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 등록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적 실체가 납입하거나 보유, 수익적으로 소유한(held beneficially)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25% 이상 또는 25%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u></p> <p>3) <u>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적 실체가 최소 25% 이상의 수익적 소유를 보유한 신탁 또는 신탁 재산</u></p> <p><u>추가: 이 법에 사용된 ‘자(사람)’는 ‘국민’, 즉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 및 법적 실체를 모두 포함한다.</u></p> <p><u>추가: “수익적 소유(수익소유권, held beneficially)”란 주식, 의결권 또는 기타 투자권 보유 등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지배권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u></p>	<p>원양산업발전법에서 ‘국민’이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야 함. 수익소유권 개념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정안이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음.</p> <p>신탁은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장치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p> <p>‘보유’라는 용어는 ‘무기명주’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것을 막기 위해 포함되었음</p> <p>25%는 통상 국제사회에서 사업에 지배권을 갖는 지분 및 의결권 소유 비율로 받아들여짐.</p>

<p><신 설></p>	<p>5. “<u>원양산업종사자란</u>” 원양어업자에게 <u>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종사자”라 한다)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종사자”라 한다)를 말한다.</u></p>		
<p><신 설></p>	<p>6. “<u>조업</u>”이란 원양어업이나 원양어업에 관련된 <u>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및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련된 행위</u>를 말한다.</p>		
<p><신 설></p>	<p>7. “<u>국제수산기구</u>”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p>		
<p><신 설></p>	<p>8. “<u>보존관리조치</u>”란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이상의 해양수산자원 종(種)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p>		
<p><신 설></p>	<p>9. “<u>기국(旗國)</u>”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계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국가를 말한다.</p>		
<p>5. “<u>해외수역</u>”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p>	<p>10. ----- 동해·서해 ----- ----- -----.</p>		

<p>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p>	<p>11. “옵서버”란----- -----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p>		
<p>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p>	<p><삭 제></p>		
<p><신 설></p>	<p>13.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 내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가 채택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p>		

<p><신 설></p>	<p>14.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p>		
<p><신 설></p>	<p>15.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p>		
<p>8. “연안국”이란 <u>해안선을 가진 국가</u>를 말한다.</p>	<p>16. -----영토의 가장자리가 바다에 잇닿아 있는-----.</p>		
<p>9. (생략)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p>	<p>17. (현행 제9호와 같음) 18. -----</p>		

<p>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심는 것을 말한다.</p>	<p>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의 -----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으로----- -----.</p>		
<p>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 및 수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당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원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함.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p>
<p>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a) 국제 규정 · 정책 · 과학적 발전사항(developments) (b) 누적 영향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 및 해양 산성화에 따른 영향 (c)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공해상 생물자원의 보존에 대한 의무 (d) 초과 어획능력(excess fishing capacity)의 예방 또는 근절의 필요성과 조업노력의 수준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p>	<p>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p>

		<u>이용에 상응하도록 함.</u>	
3. 해외수산자원의 <u>계획적 조사·개발에</u> 관한 사항	3. ----- <u>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에</u> -----	3. ----- <u>보존·관리 및 개발·이용에</u>	국제법은 “합리적인 보존” 자격을 허가하지 않음. ‘합리적’ 보존은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음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이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7.</u>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u>8.</u>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u>추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u> 필요한 사항.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 ----- ----- -----	(1) 원양어업을 <u>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소유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u> ----- ----- 추가: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u>선박과 관련된 모든 위반사항과 발생가능한 위반사항을 포함한 선박의 이력을 제공하여야 한다.</u>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원양어업체의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 개정안의 ‘원양어업을 하려는’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으로 그 조건을 확장해야 함. 2013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COMMISSION DECISION of 26.11.2013, 6쪽 32항 참조) “한국은 조업면허 발급 이전 발생가능한 위반사항 이력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IPOA IUU의 제47(7)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인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향후 법망의 허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u>추가: 어업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의 업무에 한해서만 발급될 수 있다.</u>	대한민국 국민이 편의치적선/미준수 어선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함.

		<p>(a) <u>공해어업협정 당사국인 경우</u></p> <p>(b) <u>허가와 관련된 국제·지역·소지역 수산기구나 협의(arrangement) 또는 양자·다자간 합의 당사국이거나 그러한 합의의 의무사항을 수락한 경우</u></p> <p>(c) <u>그러한 협이나 합의에 따라 공해 및 타국의 수역내 자국 선박을 통제하는 법적·행정적 장치(mechanism)을 갖추고 있는 경우</u></p>	
<신 설>	<p>⑤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u></p>		
<신 설>	<p>⑥ <u>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수산자원보호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u></p>		
<p>② <u>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p>	<p>⑦ ----- ----<u>하려는</u>----- ----- -----.</p>	<p>⑦ <u>외국인 또는 모든 형태의 외국 법적 실체와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p>	<p>대한민국 국민이 이미 운영 중인 외국 선박을 사들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함.</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u>제2항에</u> 따른 신고 및</p>	<p>⑧ ----- ----- -----<u>제7항에</u>----- -----.</p>		

<p>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p>	<p>⑨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5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p>	<p>5. 제10항에----- -----</p>		
<p>6. (생략)</p>	<p>6. (현행과 같음)</p>		
<p>⑤ (생략)</p>	<p>⑩ (현행 제5항과 같음)</p>		
<p><신 설></p>	<p>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 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⑫ 제10항에----- -----.</p>		
<p><신 설></p>	<p>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p>		

	<p>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p> <p>1.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p> <p>2. 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p>		
<p>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p>	<p>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 -----하거나 허가받은</p>		

<p>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u>어선에 대하여</u>----- <u>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u>-----</p>		
<p>1. 국제수산기구의 <u>자원 보존조치</u>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p>	<p>1. -----<u>자원 보존관리조치</u>에-----</p>	<p>1. 국제수산기구의 <u>보존조치</u>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p>	<p>“자원 보존관리조치”는 의미가 매우 한정적으로, 어업 목표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목표종 외 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존 조치까지 포함해야 함</p>
<p>2.·3.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2. 원양어업허가가 <u>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법</u> 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p>	<p>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원양어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함. 국제법을 반드시 따라야 함. 국제적 기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음</p>
<p><신 설></p>	<p>4. <u>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u></p>		
<p><신 설></p>	<p>5. <u>연안국이 자국 관할수역 내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감독·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u></p>	<p><u>추가: 자국 관할수역에 대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판단한 연안국에서 조업하는 경우</u></p>	<p>한국 어선이 적절한 보존 및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곳에서 어업 행위를 함으로써 지속가능하지 못한 어업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함.</p>
<p>4. <u>수산자원의 관리</u>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6. <u>해외수산자원의</u> -----</p>	<p>6. <u>수산자원의 관리,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양환경 보호</u>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수산자원 관리만을 한정하기 보다,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 보호라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p>

<p><신 설></p>	<p>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p>		
<p><신 설></p>	<p>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p>		
<p><신 설></p>	<p>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p>		
<p><신 설></p>	<p>10.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 이거나 또는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p>		
<p><신 설></p>	<p>11. 원양어업자가 이 법과 「수산업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p>		
<p><신 설></p>	<p>12.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13.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13.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u>선원들의 인권 문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p>선원들의 인권 문제 역시 다뤄져야 함</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u>취소</u>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u>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u>된----- -----</p>		
<p>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 제7항에----- ----- -----<u>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u>6개월</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p>	<p>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 ----- <u>해당하는</u> -----</p>	<p>6개월을 2년으로 수정</p>	<p>6개월은 충분하지 않음. 심각한 사항의 경우 2년이 바람직함.</p>

<p>제1호에 <u>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p>	<p>-----.</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u>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p> <p>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③ <u>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u>조사를 실시하고</u>, 해당 국가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IUU 어업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위한 권한이 마련되어야 함</p> <p>제2조 정의에서 제안한 것처럼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적 실체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야만 이 조항이 법망의 허점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음.</p>
<p>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u>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u></p>	<p>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u>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u> -----보존관리조치에----- -----.</p>		

<p>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원양어업자들은 해외수역에서 <u>중대한 위반행위에</u> 해당하는 ----- -----.</p>		
<p>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p>	<p>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어획량과 관련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허위보고 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p>	<p>2. 어획량과 관련하여 국제수산기구, 연안국,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기타 자료 (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 또는 기타 자료를 허위 보고하는 행위 추가: 통계 문서를 위조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investigation)와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추가: 수산물 거래 및 수입 등을 포함,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영업 행위 추가: <u>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interfering)하는 행위,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법 혹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규정에 따라 귀항하지 아니하는 경우.</u> *추가: 대한민국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협력국이 아닌 지역수산기구 관할 지역에서의 해당 기구에 의해 수립된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하여 이루어지는 조업 행위</p>	<p>2. 데이터는 지역수산기구(RFMO)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님. 어획량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보고 필요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조업 행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영업 행위, 문서 위조,어선위치추적장치 조작 등은 불법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및 FAO 항만국 협정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위반 사항임. 이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 *추가 내용은 IPOA-IUU에 근거.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만 한 지역수산기구(RFMO) 관할 수역에서 해당 RFMO의 회원국 또는 협력국이 아닌 나라의 기를 단 어선이 조업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있음.</p>

<p>방해하는 행위 <u>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u> <u>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u></p>	<p>9. 국제수산기구의 <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채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u> 10. <u>오피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u> 11. <u>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u> 12. <u>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u></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u>원양어업자가</u>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 <u>원양어업자등이</u>-----.</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u>선원의</u>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p>	<p>외국인 선원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됨. 외국인 선원은 물론 한국인 선원의 인권 보장 및 근로여건 개선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함.</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u>원양어업자가</u>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④ ----- ----- <u>원양어업자등이</u>-----.</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u>보존조치</u>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원양어업자에게</u>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 <u>보존관리조치</u>----- <u>원양어업자등에게</u>-----.</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u>원양어업자에</u>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용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용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⑥ ----- <u>원양어업자등에</u>----- ----- -----.</p>		
<p><신 설></p>	<p>⑦ <u>원양어업자등은</u>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⑧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u>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u>7일 이내</u>에 처리하여야 한다.</p>	<p>“신속하게”는 해석이 다를 수 있음. 구체적으로 기간을 7일로 명시해야 함.</p>
<p><신 설></p>	<p>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u>행위가</u>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 <u>조업활동의 즉시 중단</u> 2. <u>지정된 항구로 입항</u> 3. <u>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u></p>		
<p>⑦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⑩ ----- <u>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u> -----.</p>		

<p><신 설></p>	<p>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제14조(항만국 검색) ① <u>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u></p>	<p>제14조(항만국 검색) ① <u>해외에서----- ----- 48시간----- ----- -----.</u></p>		
<p><신 설></p>	<p>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u></p>		
<p>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u></p>	<p>③ ----- ----- ----- -----.</p>	<p><u>추가: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은 원양어업자가 보유한 어업권(fishing licenses), 해당 어선의 VMS 위치, 어획량 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등 기타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어획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EU 2013 보고서 제34항에 어획증명서 대조검토의 결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p>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국제수산물거래</u>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2. <u>국제수산물거래 또는 외국 정부에</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u>		
<신 설>	5. <u>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u>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u>입출항을</u>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u>양륙·전재</u>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u>입항·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u> ----- <u>양륙·전재·포장·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등을</u>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3항에----- -----.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3항에 따른 <u>입출항 금지</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u>입항·출항 금지</u> , 제3항에 따른 <u>검사·질문</u> ----- -----.		
		추가: <u>항만국 검색 절차</u>	항만국 검색에 관한 상세한 절차를

		<p>1. <u>검색을 맡은 공무원</u>은 해당 법령, 규정, 국제 보존관리조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의 관련 지역·갑판·선실·가공 및 비가공 수산물·그물·어구·장비나 모든 관련 문서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검색에 따른 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p> <p>2. 검색에는 모든 양륙 또는 전재작업 감시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전 양륙통지서에 기록된 수량과 양륙되거나 전재될 어종의 수량간의 교차확인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3. 검색을 맡은 공무원은 해당 어선 선장의 입회 하에 검색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할 권리와 사유를 갖는다. 해당 공무원은 항해일지에 검색이 이루어진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4. 검색보고서 사본은 어선의 소유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5. 선장은 어선의 검색에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검색을 맡은 공무원의 임무수행을 방해, 협박 또는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p>	<p>명시해야 함. 제시된 내용은 EU IUU 통제법 (2008) 제10조를 기초로 하고 있음</p>
<p>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생략)</p>	<p>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u>추가: 원양어업자가 운영 또는 소유한 선박이 30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VMS 신호를 전송하지 않은</u></p>	<p>VMS 송신(transponding)이 제대로 되지 않는 채로 30일 이상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VMS가 제대로</p>

		<p><u>경우 선박의 운영자와 소유자는 최단 직항로를 통해 즉각적으로 한국 항구로 귀항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작동하지 않을 때 선박이 한국 관할 수역 외에 있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0일이 되어야 하며 그 안에 항구로 귀환해야 함.</p>
<p><신 설></p>	<p>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신 설></p>	<p>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 <u>해양수산부장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u> 1. 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 제12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제13조의 원양어업자들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선박</p>	<p>② <u>해양수산부장은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u></p> <p>추가: 1. <u>해양수산부장은 IUU선박목록을 수립하여야 한다. IUU 선박목록은 어선의 IUU 어업을 규명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어선을 포함하여야 한다</u> 2. <u>선박목록 등재에 앞서 해양수산부장은 해당선박의 소유주와 타당한 경우 운영자에게 상세한 등재사유서와 해당 어선의 IUU 어업의심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재사유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여야 하고 적절한 시간과 시설을 두고 해당 소유자와 타당한 경우</u></p>	<p>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은 내우 중요한 업무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의가 수반되어야 함. IUU 목록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EU 2008 Directive 제27조를 참조함.</p>

	<p>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운영자에게 해당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할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u></p> <p>3. <u>어선의 IUU선박목록 등재결정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정과 결정사유를 해당 선박의 소유자와 타당한 경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4. <u>선박의 기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a) <u>해당 선박의 IUU선박목록 등재 사실 통보와 상세한 사유를 해당 기국에 제공</u></p> <p>(b) <u>IUU선박목록을 보유한 기국에 다음을 요청</u></p> <p>(i) <u>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등재사실, 등재 사유, 등재에 따른 결과 통지</u></p> <p>(ii) <u>등록 또는 어업권 취소 등 IUU 어업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u></p>	
<p>제16조(조업실적 등의 <u>보고</u>) ① (생략)</p>	<p>제16조(조업실적 등의 <u>보고 등</u>) ① (현행과 같음)</p>	<p>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u>조업상황, 대상 종 어획실적과 혼획량,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u>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해양 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혼획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p>
		<p>추가: <u>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u></p>	<p>자체보고(self reporting) 준수 필요.</p>

		<u>그러한 사실과 사유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제13조에 따른 위반으로 본다.</u>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전채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 2(실태조사)		<u>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원양어업자를 감사하여 수익적 소유주에 대한 자료를 갱신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를 위한 보고 요건을 별도로 규정한다.</u>	현 개정안에는 수익적 소유자를 철저하게 파악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합작어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50%/49%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합작어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시행령 제2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규제 관리가 불가능하다.
<신 설>	제17조의2(사법경찰권) _____ 조업 감시·감독·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u>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의 감시,감독,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계획)</u>	감시,감독,통제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철저히 직무를

	<p><u>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u></p>	<p><u>및 특별조사팀을 수립한다.</u></p> <p><u>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와 관련 산업, 어업활동 및 항만 통제에 있어 감시, 검색, 수색, 집행, 지도, 통제 및 항만국검색을 맡은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u></p> <p><u>추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현 조항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원양산업발전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원양산업자가 제대로 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검색 및 감사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합작어업 등 다양한 형태로 원양어업에 관련된 사업체를 포함, 원양어업자의 소유지를 검색하거나 문서나 자료, 컴퓨터 기기, 데이터베이스, 파일, 기타 자료 및 장비를 수색, 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u>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 검색나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u></p>	<p>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시, 감독, 통제할 것인지 확실한 체계와 특별조사팀이 수립되어야 함.</p> <p>공무원은 검색 및 압수 권한을 가져야 함.</p>
		<p><u>추가: IUU의심 사례 발생 시 조사 체계</u> <u>1.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할 조직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본 조사체계는 EU IUU 통제법 (2008) 제25조에 명시된 사항임.</p>

		<p><u>(a)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모든 정보</u></p> <p><u>(b) 그 외 다음에 해당하는 적절한 관련 정보</u></p> <p><u>(i) 어획자료</u></p> <p><u>(ii) 국가 통계 및 기타 신뢰할만한 출처를 통해 확보한 거래(trade) 정보</u></p> <p><u>(iii) 선박 등록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u></p> <p><u>(iv) 지역수산기구 어획문서 또는 통계문서 프로그램</u></p> <p><u>(v)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 현장 검색이나 그 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 및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보고되거나 채택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 목록에 대한 보고</u></p> <p><u>(vi)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에 대한 보고</u></p> <p><u>(vii) 그 밖에 항구에서 확보한 정보 및 어장관련 정보</u></p>	
<p>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p>		<p><u>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어선의 운영 정보를 포함, 어업활동 및 어선, 기타 관련 정보를 국제수산기구 및 국제 협정, 기타 국제 조직의 필요 및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상업적 정보의 보안 문제는 해당 기구, 협약, 조직과의 정보 보안 규정에 따르고,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u></p>	<p>국제협력을 통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볼 때, 해양수산부는 지역수산기구 등이 자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p>
<p>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p>	<p>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p>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u>	3. <u>옵서버</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조 및 용자) ① (생략)	제26조(보조 및 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u>일부를</u> 보조 또는 용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 <u>전부 또는 일부를</u> ----- -----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u>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과의 합치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추가: 대통령령은 남획과 초과어획능력 예방 또는 근절과 조업노력의 수준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은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수산기구에 의해 제공된 어획능력 관련 조치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보조금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제적인 준수사항에 합치되도록 해야 함.
<신 설>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의 폐기·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u>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 국제협약과 지침에 따라</u>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의 폐기, 감축 또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적인 합치성을 확보해야 함.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용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 조건 및 제3항에 따른 폐기·감축 기준 및 조건 -----.</p>		
<p>제29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삭 제></p>		
<p>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33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p>	<p>제33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5년----- 도매가격을-----5배----- -----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에</p>	<p>추가: 유죄 판결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회사 등 법적 실체일 경우, 사람일 경우 가해지는 벌금의 두 배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제13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에</p>	<p>사람이 아닌 회사 등 법적 실체가 유죄인 것으로 판결날 경우, 법적 실체를 징역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처벌이 사람일 때보다 높아야 함. “징역 또는 벌금” 대신 “징역 및 벌금”으로 해야 함.</p>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상당하는 벌금----- -----	
<신 설>	② 제13조제2항제2호·제6호·제7호·제10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A 제13조2항제2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8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또는 벌금” 대신 “징역 및 벌금”으로 해야 함. 제13조 제3항을 포함하였음. 선원 인권 침해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3천만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또는 벌금” 대신 “징역 및 벌금”으로 해야 함. 벌금은 최소 4천만원(3만 유로)이 되어야 함.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1. -----원양어업 변경허가를-----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천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또는 벌금” 대신 “징역 및 벌금”으로 해야 함. 2천만원은 15,000유로에 불과함(2배는 더 되어야 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2. 제6조제7항에----- ----- -----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7항에----- ----- -----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6조제7항에----- ----- -----		
④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천만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및 4천만원-----.	벌금은 최소 4천만원(3만 유로)이 되어야 함. “징역 또는 벌금” 대신 “징역 및 벌금”으로 해야 함.
<신 설>	1.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		

<p><신 설></p>	<p>3.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등을 한 자.</p>		
<p>⑤ (생략)</p>	<p>⑥ (현행과 같음)</p>	<p>추가: ⑥ 징역 및 벌금 부과에 대하여 제1항에서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 자격이 영구적으로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상실될 수 있다.</p>	<p>자격상실(박탈)도 필요함.</p>
<p>제35조(몰수) ①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p>	<p>제35조(몰수) ①----- -----어획물·제품·어구·폭발물----- 몰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p>	<p>① 제 33조의 경우 범인(offender)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p>	<p>어구뿐만 아니라 어선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몰수조치가 필수적으로 강제되어야 함.</p>
		<p>추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 내의 모든 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다.</p>	<p>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저지른 경우 선내 모든 어획물이 몰수되어야 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36조(과태료) ①-----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삭 제></p>		
<p>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p>	<p><삭 제></p>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	--

첨부 3:

뉴질랜드 수역에서 일어난 한국 어선의 선원 인권 침해 사례 모음

Oyang 70		
IUU activity	Human right abuse	선원 인권침해
Chronology of the case	18 June 2010, Oyang 70 sank off Otago with the loss of six men (5 Indonesian, 1 Korean). From the testimony from survivors, they were mistreated; working for 2-3 days without breaks, eating only fish without rice or noodles and were provided with only 2 fish per day. ¹	2010년 6월 18일 오양 70호의 침몰로 6명이 사망. (인도네시아 선원3명, 한국인 선장 1명, 인도네시아인 2명) 생존자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등의 선원들이 진술하기를, 선원들이 2-3일간 쉬는 시간 없이 노동을 할 것을 강요당하고 거부할 경우 음식을 주지 않았다 진술 또한 식량도 없이 잡는 물고기로 연명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하루에 물고기 2개만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²
Oyang 75		
IUU activity	Human right abuse, forgery wage documents, dumping waste 1. 2011: 39 crew cited human right abuse 2. Illegal fishing dumping and filling false catch returns 3. Illegal dumping waste	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사문서 위조 및 선원법 위반 1. 2011년 : 39명의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제기, 임금문서 위조 2. 2012 : 불법해양투기 및 어획량 허위신고 2013 : 불법 해양투기
Chronology of the case	1. 20 June 2011, 39 crew members escaped from the vessel in Christchurch. They claimed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underpayment. NZ govt started investigations into foreign vessels in its waters in Aug 2011 and announced the report in Feb 2012, saying practically only KR vessels have human right abuses of such extent.	1. 2011년 6월 20일 오양 75호, 39명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탈출함. 39명 모두 언어 및 심리적 폭력, 임금 미지급을 포함한 계약 위반, 성폭력, 폭행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8월부터 자국 수역의 외국선박 조사에 착수하였고

¹ <http://www.munz.org.nz/2013/03/08/findings-on-oyang-70-sinking-a-stain-of-new-zealands-conscience/>

² <http://www.3news.co.nz/nznews/oyang-70-crew-reveal-why-ship-sank-2010082216>

	<p>28 Sep 2012, KR govt announced the results of its investigation report, confirming the crimes and charged 5 KR crews and 5 officers of the Sajo Oyang company. End of 2012, Busan court reached decides not to indict because Sajo Oyang provided a statement from the plaintiffs (the abused crew members) saying they did not want to press charges against that the Korean crew and company officers. Jun 2012, the above human rights situation is covered in the TIP report, causing the US to warn KR that it could downgrade KR to level 2.</p> <p>2. Dumping almost 405 tons of fish at sea on both Southern island voyages, filing false catch returns³</p>	<p>2012년 2월 발표된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에는 거의 한국 선박에만 이런 류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됨 2012년 9월 28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권침해, 임금체불, 사문서 위조 및 선원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인선원 5명과 사조오양 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 2012년말 부산지검은 사건에 대해 피의자인 사조 오양측에서 선원들이 관련자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 2012년 6월 발간된 TIP(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보고서에선 사조 원양어선의 인권 유린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미국 국무부가 2013년 2월 2등급으로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함</p> <p>2. 남섬으로 두번의 항해동안 약 405톤에 달하는 물고기들을 가치가 없다는 판단 하에 무단 투기, (약 \$1.4m가치) 뉴질랜드 정부는 벌금(NZD) 420,000을 판결 (2012년 9월)</p>
Fines/Settlement	<p>1. Korean government seized the case 2. 2012, Fined \$420,000 for fish dumping⁴ 3. 2013, Find \$10,500</p>	<p>1. 한국 정부 불기소 처분 2. 무단투기 벌금 처분(뉴질랜드) 2012년 벌금(NZD) 420,000 3. 2013년 벌금 NZD 10,500</p>
Oyang 77		
IUU activity	Fish dumping and misreporting catch	선원 임금체불 및 어획량 거짓 신고
Chronology of the case	<p>13 IUU charges were brought in 2012, and its fishing license revoked. Crew also claimed \$2.335 million in unpaid wages over two years. Vessel name was changed to Jille in 2013. In 2014 the captain was</p>	<p>2012년 13건의 불법어업이 확인되어 어업허가가 취소됨. 또한 선원들도 2년 동안 2백만 달러의 임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함.</p>

³ <http://www.mpi.govt.nz/news-resources/news/crew-of-oyang-75-sentenced>

⁴ <http://www.3news.co.nz/nznews/oyang-75-crew-fined-420000-for-fish-dumping-2012092112>

	convicted and fined \$120,500 and the vessel was forfeited to the New Zealand Government ⁵	뉴질랜드 남섬 동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잡은 근해어 53톤을 작고 시장이 없다는 이유로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됨. 어획량을 뉴질랜드 당국에 거짓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음. ⁶ 2013년 이름을 Jille 로 변경하였음. 2014년 9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방법원이 선장에 12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한국 사조오양 소속 원양어선 '오양 77호'에 몰수조치를 내림
Fines/Settlement	Captain fined \$120,500 in 2014 and the \$1.5million vessel was forfeited	2014년 선장은 12만 달러의 벌금형, 배는 몰수조치 됨
Sin Ji		
IUU activity	Human right abuse	선원 인권침해
Chronology of the case	In 2009, the ITF and Maritime Union investigated the Shin Ji after 12 Indonesian crew left the vessel. The reason was that the vessel were not paying wages, problems with harassment from officers, and substandard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⁷ In 2011, 7 crews walked off, claiming they had not been paid in two years.	2009년, 12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임금체불과 폭력과 열악한 컨디션에 하선, ITF와 뉴질랜드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지시 ⁸ 2011년 3월, 해당 어선에서 7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2년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배에서 탈주
Melilla 201,203		
IUU activity	Human right abuse and unpaid wages	선원 인권침해 및 임금미지급

⁵ <http://www.mpi.govt.nz/news-resources/news/trawler-forfeited-heavy-fine-for-fish-dumping>

<http://www.stuff.co.nz/sunday-news/latest-edition/6556276/Crew-aid-foreign-fishing-boats-probe>

⁶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02103141&code=970207

⁷ <http://www.dol.govt.nz/news/media/2012/foreign-charter-vessels-2012-tough-action.asp>

⁸ <http://www.munz.org.nz/2011/10/16/fishing-charges-for-oyang-75-officers-point-to-industry-wide-failings/>

Chronology of the case	<p>Melilla 201 is accused Illegally discarding fish at sea and filing "false or misleading" catch returns. Also, she is claiming \$4 million in unpaid and underpaid wages have been claimed by the crew of this vessel.⁹</p> <p>2014, Melilla 201, a problematic vessel with human right abuse and underpaid wages, was finally seized.</p> <p>Taejin Fisheries Co of Busan owe 93 Indonesian crew \$4.5 million in wages¹⁰</p>	<p>2014년 기준, 멜리아 201호는 지난 2년간 인권 침해와 선원 고용문제로 문제를 일으킴</p> <p>2014년 10월, 해양 무단 투기혐의로 뉴질랜드 정부에 잡힌 태진수산의 배 Melilla 201, 203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압수 처리함</p> <p>태진수산은 93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4천5백만달러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현재 배를 포기한 상태</p>
Fines/Settlement	<p>March 2013, The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seized the Melilla 201 and cancelled the fishing licenses of both vessels(Melilla 201,203)</p>	<p>2013년 3월 뉴질랜드 정부는 멜리아 201호를 몰수하고 201,203호의 어업허가권을 취소함</p>
Dong Won fisheries and Dong Nam		
IUU activity	<p>Human right abuse and unpaid wages</p>	<p>선원 인권침해 및 임금미지급</p>
Chronology of the case	<p>Two Korean fishing companies (Dong Won fisheries and Dong Nam) operating off New Zealand are being taken to court in that country by over 200 Indonesian sailors working for them for unpaid wages and being subjected to harsh working conditions.¹¹</p>	<p>임금 미지급 문제로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뉴질랜드 측에 동원수산에 동남아 임금을 미지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했다며 2014년 총 1400만 달러(14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 선원들은 '노동 착취' 수준의 저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¹²</p>

⁹ <http://www.odt.co.nz/news/dunedin/285419/traulers-remain-while-cases-queue-court>

¹⁰ <http://www.stuff.co.nz/business/industries/10654518/Government-seizes-Korean-trawler>

¹¹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8-2014&day=5&id=70400&l=e&country=&special=&ndb=1&df=1>

¹²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66237>